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현황 —설문 조사 및 화법 교육 교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서영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① 논문은 제5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본고의 지정토론을 맡아 도움 말씀을 주셨던 정민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오늘날의 사회가 윤리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기업 윤리, 연구 윤리, 의료 윤리, 환경 윤리, 정보 윤리 등 각종 윤리에 대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강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행위를 도모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는 의사소통 영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특히 사회 고위층 및 유명 인사들의 막말이나 부적절한 언어 표현이 이슈화되고 청소년들의 과도한 욕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던 일련의 사태를 고려할 때, 의사소통 행위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과 반성적 고찰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는 주로 인성 교육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기 때문에 화법 교육에서까지 이에 대해 접근하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적 현상이 의사소통 과정 중에 언어 행위로 표출되었다는 점, 청소년 언어문화의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중요해지고 말할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돌출 발

언이나 무책임한 말로 인해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화법 교육에서도 의사소통의 윤리적 여과 장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행히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태도’ 범주에 ‘듣기·말하기의 윤리’가 하위 범주로 포함되어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듣기·말하기의 윤리’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그 심각성에 대비하여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언어 예절에 대한 논의나 태도 중심의 화법 교육을 촉구하는 논의들을 모아 분석한다면 거칠게나마 나름의 시사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관련 내용을 ‘듣기·말하기의 윤리’라고 명명하고 화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하나의 범주로 설정했을 때는 그것의 설정 취지에 부합하는 의미 부여가 있어야 하고 그 실체를 구체화하여 실제적 교육과정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고는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인식 현황과 의사소통 윤리 관련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 의사소통 윤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화법 교육에 관계하는 대학 교수 및 초·중등학교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인식과 현재 교육 현황을 살피고,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교육 내용의 동향을 파악해 보는 일환으로 대학 화법 교육이나 일반 화법 교육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교양 교육적 성격의 화법서와 초·중등학교 화법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교육과정 내용을 양적 내용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터하여 의사소통 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윤리의 개념

인간 행위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의 결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윤리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특히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의사소통 행위 역시 가치 판단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제하고 말로써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윤리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Johannessen(2001), 최인자(2006)는 의식적인 목적 하에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의사소통에서 윤리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윤리란 사람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행위 및 사고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고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의사소통 윤리란 의사소통 행위 참여자 간에 보다 원활한 소통과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일련의 상호교섭 과정에 윤리적 사고를 적용하고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며 상호작용하는 대인 간 사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집단에서의 공적 의사소통, 디지털 통신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 등 의사소통이 전개되는 모든 국면에서 참여자들이 견지해야 할 도리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Neher & Sandin(2007)은 의사소통의 영역에 윤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를 제공하는 윤리학적 기반 이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윤리의 기반 이론으로 고대 그리스의 덕 윤리, Kant의 의무 윤리, Bentham과 Mill의 공리주의, Buber · Rogers · Levinas¹ · Freire의 대화

1 21세기 철학자 중 대화의 윤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는 Levinas이다. Levinas의 윤리학은 타자를 진정으로 마주하고 존재의 다름을 인식하며 자아중심성을 타자중심성으로

의 윤리학을 고찰한바 있다. 그중 대화의 윤리학은 다른 것에 비해 의사소통 윤리에 보다 직접적인 관여한다. 이는 의사소통 행위가 일어나는 동안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신념, 믿음, 가치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희생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윤리학이다. 대화라는 제한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의사소통의 기저 양식이 대화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와 행동,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리적 의사소통의 지침이나 의사소통 윤리로 언급되는 요소들은 대동소이하다. Neher & Sandin(2007)은 대화의 윤리학을 바탕으로 대인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원리로 진실성, 상황에 대한 완전한 존중, 상대 중심성, 적극적 듣기와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Coopman & Lull(2012)은 윤리적 의사소통의 원리로서 진실성, 말하기의 자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의 제공, 배려와 상호이해의 분위기 조성, 협오스러운 언어 사용 경계, 표절에 대한 인식,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 다양성의 존중을 제시하였다. Lucas(2009)는 윤리적인 연설을 위한 지침으로서 연설 목표의 윤리성, 철저한 준비, 표절에 대한 경계, 정직성, 비방적 명명의 기피, 윤리적 원칙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청중의 윤리적 책임도 강조하였는데, 윤리적 경청을 위한 세부 지침으로 예의와 관심을 갖춘 경청, 연사에 대한 선입견 경계,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Verderber *et al.*(2013)은 정직성, 일관성, 공정성, 상대에 대한 존중, 책임감을 윤리적 의사소통 참여자의 행동 지침으로 강조하였다. 결국 의사소통 윤리는 의사소통 과정에 진실, 배려, 책임, 존중 등의 요소가 작동되도록 하여 보다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로 전환할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에게 말하기는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인데, 응답 능력(response ability)은 곧 대화에서 요구되는 타자에 대한 책임감(responsibility)이다.

2.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연구 현황과 시사점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 수사학, 사회학, 의사소통학, 언어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Johannesen, 2001; Pearson, *et al.*, 2006). 의사소통 교육 현장에서 윤리적 측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사소통 윤리 교육을 어느 정도나 실천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논의(Johnson, 1970; Jensen, 1985; Arnett, 1987; Christians & Lambeth, 1996), 의사소통 윤리로 다루고 있는 규범 요소들을 분석하는 논의(Pearson, *et al.*, 2006) 등 의사소통 윤리를 단일 주제로 하는 논의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별도의 하위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² 의사소통 윤리 전반을 개관하며 관련 논의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저서(Jaksa & Pritchard, 1994; Jensen, 1997; Neher & Sandin, 2007; Johannesen, *et al.*, 2008 등)도 다수 출판되었다. 한편 NAC(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에서는 윤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신조(Credo for Ethical Communication)를 발표하고, NCA의 구성원에게 의사소통 윤리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985년에 조직된 NCA의 의사소통 윤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학술 연구와 함께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것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연 2회에 걸쳐 전국 의사소통 윤리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Johannesen, 2001: 204). 이처럼 서구의 의사소통 연구나 언어 교육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 기능 신장에 대해 논의하면서도 언어 행위에서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2 Johannesen(2001)은 의사소통 윤리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사를 고찰하였다. 그 흐름은 크게 7가지인데, 미디어와 언론의 윤리에 대한 학술적 논의나 출판의 급증, 개인 및 사회 간 의사소통에서 준수해야 윤리의 규명, 자유와 책임의 상호 관계에 대한 규명, 조직 내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관심 증가, 의사소통 윤리 논의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기여, 배려의 윤리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의 확산, 현대의 의사소통에 고대 그리스의 덕의 윤리를 적용해 보고자 하는 시도 등으로 요약된다.

계속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간접적이고 잠재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논의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화법 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면서 인간 교육을 위한 화법의 필요성이나 언어 사용 예절을 강조했던 논의들이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이도영(2006)은 인간성을 발현할 수 있는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임칠성(2011)은 화법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어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관계 등 삶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언어 기능의 문제와 더불어 인간의 문제·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말하기가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말하기는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교섭 과정이 인간적이어야 의사소통 목적 달성을 물론이고 개인의 삶과 사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 과정이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사소통 참여자 상호 간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서 윤리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때 이러한 논의는 ‘상생 화용’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듯하였다. 최현섭(2003)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상생 화용은 진실한 언어 사용, 상대 존중 및 배려, 의미의 생성을 핵심 원리로 한다. 이는 국어교육에서 윤리성 문제를 제기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체가 모호하여 구체적 접근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최영환(2006: 250)은 상생 언어가 우리 삶에 어떻게 투영되어야 하며,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 화법 교육에서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주로 화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큰 틀이나 패러다임 수준, 철학적 지향 차원에서 잠재적으로 전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우에 따라 의사소통의 본질 차원에서 상호 배려와 존중 등의 덕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포착되기도 하지만, 주로 대화 맥락에 국한되어 선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논의하면서 윤리적 자질까지 고려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양의 인지심리학이나 기능주의 언어학의 영향 아래 주로 언어 사용의 기능 습득에 관심을 기울이느라 언어 사용의 윤리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천착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³ 이에 지금부터라도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 교육을 체계화·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 윤리를 적용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비판적 의문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중요성과 위상에 대해서는 결코 부인할 수 없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Johannesen, 2001; Neher & Sandinl, 2007; Tammy, 2012 등). 한편 의사소통 윤리는 도덕 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끈이라고 응수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 될수록 말하기 교육은 언어 기능 중심으로만 치우치게 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멀어지게 된다. 화법 교육이 오늘 날의 문제적 언어 현상과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게 되면 그 교육적 당위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⁴ 이에 윤리적 의

3 실제로 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윤리 문제를 주제로 삼아 직접적으로 다루는 논의는 전무 했다(이는 연구자가 2013년 10월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한국학술정보(주), 국립중앙 도서관, 국회도서관을 통해 검색한 결과로, 미처 살피지 못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음).

4 박인기(2012)는 미래의 화법교육은 현재의 화법교육론이 보여 주는 학문적·이론적 자족성을 넘어서, 현실 언어현상에 대한 실천적 해결책을 부단히 요청받게 될 것인바, 이에 화답하지 못하면 화법교육의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사소통 또는 의사소통의 윤리에 대한 담론은 화법 교육이 현실의 삶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화법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의사소통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의사소통 윤리 교육에 대한 현재의 인식 수준과 그 현황을 살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현재적 상황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소수의 사례만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그 결과의 타당성이 나 일반화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정 수업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에 보다 많은 수의 국어 교육 관계자들의 인식과 보다 일반적인 교육 현황을 살피고자 설문 조사 및 교재⁵ 내용 분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1.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교사와 화법 교육에 관심이 많으며 대학에서 화법론(의사소통론) 또는 화법교육론(의사소통교육론) 등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129명 중 108명이 응답 결과를 회신하여 회수율은 83.72%로 나타났다.

5 교재는 교육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또한 학습자의 사고와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화법 교육의 주체이기도 한 저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표 1. 설문 응답자

소속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합계
응답자 수	32	29	35	12	108

조사 내용은 의사소통 윤리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사소통 윤리 관련 내용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다면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현재의 교육 정도에 만족하는지, 향후 의사소통 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는 선택형 문항의 경우 항목별 응답자 수(명)와 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고, 자유 응답형 문항의 경우 내용 분석 후 일정하게 유형화하여 응답자 수(명)와 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2.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질적 자료인 각종 텍스트 자료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양적 자료로 변환하고 그에 근거하여 보다 타당한 추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1) 내용 분석의 대상

본 연구는 예상 독자에 대한 교양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며 화법 능력 전반을 두루 다루는 도서⁶ 중 2000년 이후 출판된 도서로 분석 대상 범위를 제한하여 1차적으로 37권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출간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중

6 특정 상황 맥락에 국한된 화법서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행위 전반에 걸쳐 윤리성을 논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화법 교육계의 현재적 인식만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인식도 더불어 살피고자 하므로, 주요 독자층이 화법 및 화법 교육 연구자로만 제한된 이론서들도 제외하였다.

에게 널리 읽히지 않은 도서는 화법 교육의 흐름이나 양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인터넷 도서 판매 홈페이지 세 곳을 통해 판매량 순위를 확인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대출 건수 정보를 요청하여 그 중 순위가 높은 도서를 분석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한편 화법 교육에 관심이 많고 대학에서 화법론(의사소통론) 또는 화법교육론(의사소통교육론) 등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강의에서 주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화법 관련서는 총 7권이며, 도서의 서지 사항 정보를 출판년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종택(2005),『생활 속의 화법』, 정림사.
2. 구현정·전영옥(2005),『의사소통의 기법』, 박이정.
3. 이창덕·임칠성·심영택 외(2005),『삶과 화법』, 박이정.
4. 정승혜·문금현(2006),『대학생을 위한 화법 강의』, 태학사.
5. 구현정·전정미(2007),『화법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6. 최형용·김수현·조경하(2009),『열린 세상을 향한 발표와 토론』, 박이정.
7. 이창덕·임칠성·심영택 외(2010),『화법 교육론』, 역락.

연번 1~6의 도서는 대학생 및 일반 대중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인문교양서로, 대학 화법 교육과 일반 화법 교육의 단면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연번 7의 도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 국어 교사나 협직 국어 교사, 국어교육학을 공부하는 이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화법 교육 개론서인데, 우리나라 화법 교육 내용 전반을 개관할 수 있고 연번 1~6의 내용 구성과도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맺고 있어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연구 목적에 비추어 분석 자료 선정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화법 교육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화법 교육 내용도 살펴야 할 것이다. 이에 초·중등학교 화법 교육의 근간이 되고 화법 교육 내용의 요체가 되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영역 교육 내용도 연구 대

상에 포함시켰다. 즉 학교 화법 교육에서 의사소통 윤리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나 교육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분석 자료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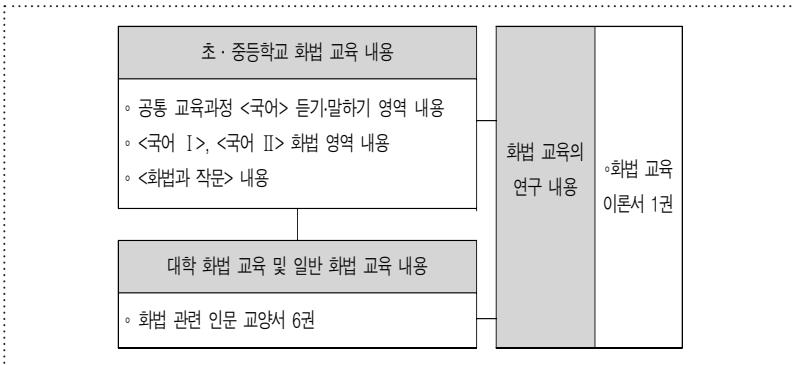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분석 대상 자료

2) 내용 분석의 절차⁷

(1) 분석 항목 및 분류 범주 구성

분석 항목은 크게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 정도,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내용 맥락,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비중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표 2>와 같이 분석 항목별 분류 범주를 설정하여 연구 대상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보를 코딩하였다.

7 본 연구의 내용 분석 방법은 Poldner *et al.*(2012)의 내용 분석의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따르되, 주재현(2002), 김성태(2005), 박양주·이양희(2012)를 참고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표 2. 분석 항목 및 분류 범주

항목	분류 범주	세부 내용
인식 정도	인식 부재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인식 및 관련 논의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간접적 인식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논의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경우
	직접적 인식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	개방성	상대의 생각에 대한 열린 태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등
	말에 대한 책임	자신이 한 말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 결과를 고려한 신중한 말하기 등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의 존재를 돌보아 주고 보살피고자 하는 태도, 상대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상대방 체면을 고려하여 말하기 등
	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	욕설 및 혐owan 등 부정적 표현 자체하기, 상대를 비방하는 말 하지 않기, 차별적 표현 하지 않기 등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	상대방의 입장 및 의견이나 생각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기 등
	적극적 경청	청자로서 책임 다하기, 공감적 경청, 화자의 말에 관심 갖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등
	진실성	진실된 말하기, 정직하게 말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기 등
	표절에 대한 경계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출처 밝히기, 자료에 대한 접근 기회 보장하기 등
	공정성	편견 최소화, 중립성 지키기, 정보를 왜곡하지 않기, 상대에 대한 선입견 삼가기 등
논의되는 내용 맥락	기타 ⁸	언행일치, 일관성, 성실성, 공손한 태도, 통신 언어 윤리 등
	의사소통의 본질	의사소통의 개념, 성격, 본질, 구성 요소, 기능, 유형 등
	의사소통의 일반 원리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 특성, 유형, 활용 전략 등
	말하기 일반	말하기의 내용 선정, 조직, 표현 등의 단계별 원리 및 전략 등
	듣기 일반	듣기의 유형, 방법, 전략, 태도 등
	언어 예절	호칭, 높임법, 상황별 인사말 등
	화법 유형별 이해	각종 화법 유형별 본질, 원리, 방법, 단계별 전략, 태도 등

8 언행일치, 일관성, 성실성, 공손성, 통신 언어 윤리는 다수의 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으로만 나타나 '기타' 범주로 처리하였다.

논의되는 비중 수준	구절 수준	한 문장 내에서 단어 또는 구절 정도로 관련 요소를 언급한 경우
	문장 수준	한 문장으로 관련 요소를 언급한 경우
	문단 수준	두 문장 이상으로 일정한 의미 단락을 형성하며 관련 요소를 언급한 경우
	항목 수준	항목 차원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한 쪽 이상으로 관련 요소를 언급한 경우
	장절 수준	장 또는 절 차원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두 쪽 이상으로 관련 요소를 언급한 경우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 정도’ 항목에서 인식 부재는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와 관련된 논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다. 간접적 인식은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와 관련된 논의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의사소통 윤리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논의 내용이 의사소통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이다. 직접적 인식은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별도의 장이나 절,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윤리의 중요성 및 의사소통 윤리를 구성하는 하위 내용 요소 등을 명시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경우이다.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 항목의 분류 범주는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 본고의 분석 대상 자료의 내용을 개방 코딩한 결과를 토대로 귀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아울러 대중 연설 교재에서 의사소통 윤리 요소 분석을 시도한 Pearson *et al.*(2006)의 분류 범주와 Lucas(2009), Coopman & Lull(2012), Griffin & Bone(2013), Verderber *et al.*(2013)에서 제시한 윤리적 의사소통 지침 요소들을 참고한 것이다. 유행화 과정에서는 가급적 분석 자료에 제시된 의미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과도하게 추상화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이로 인해 범주 간에 상호배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범주 층위가 상이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은 상대에 대한 배려나 적극적 경청의 의미와 일부 겹치며, 표절에 대한 경계나 비판적 언어 표현에 대한 경계는 배려나 책임과는 층위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배타성과 층위를 고려하여 상위어로 추상화할 경우 각각이 다른 것들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의미까지도 희석될 수 있어, 분

류 범주 구분이 정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유형화하기로 하였다.⁹

‘논의되는 내용 맥락’ 항목은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어떠한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일정한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분류 범주는 분석 대상 도서 7권의 목차를 살펴 설정하였다.

‘논의되는 비중 수준’ 항목은 관련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논의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의사소통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정도는 구절·문장·문단·항목·장절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예비 코딩 및 신뢰도 검증

코딩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3명의 코더들이 참여하였다. 코더들은 모두 내용 분석 방법을 경험한 이들로, 연구자 이외의 코더들은 각각 국어 교육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언론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여 분석 자료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먼저 코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코더들에게 연구 목적, 분석 항목과 분류 범주, 계량화 방법 등을 설명하여 코딩 지침을 숙지시키고 코딩표(coding sheet)에 맞춰 코딩을 하는 시범을 보였다. 그 후 분석 자료 중 임의로 1권을 선택하여 예비 코딩을 실시하고, 예비 코딩 결과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를 코헨의 카파(Cohen's Kappa)값을 통해 검증하였다. 전체 항목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alpha=0.825$ 로 나타나 코딩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수치로 보고 전체 코딩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9 본고는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피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분석 자료의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분류 범주나 층위가 정교하지 못하지만, 향후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별도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확정하고자 할 때 분류 범주 간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코딩 수행 및 신뢰도 검증

분석 대상 도서의 전체 내용을 정독하며 의사소통 윤리와 관련되는 논의 내용을 찾아서 코딩하였다. 본 코딩 수행 후 코더 간 신뢰도를 코헨의 카파(Cohen's Kappa)값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 윤리성에 대한 인식 정도 코딩의 신뢰도는 $\alpha=0.892$,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 코딩의 신뢰도는 $\alpha=0.821$, 논의되는 내용 맥락 코딩의 신뢰도는 $\alpha=0.910$, 논의되는 비중 수준 코딩의 신뢰도는 $\alpha=0.917$ 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는 코딩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코딩 결과를 확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의사소통 윤리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국어 교육 관계자 108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의사소통 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 현황

구분	소속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의사소통 윤리 교육의 중요성	초			2	12	18	32
	중			1	7	21	29
	고			4	17	14	35
	대			1	4	7	12
	합계	0 (0.00%)	0 (0.00%)	8 (7.40%)	40 (37.03%)	60 (55.55%)	108 (100%)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별도 교육의 필요성	초	1		1	10	20	32
	중			1	12	16	29
	고		2	8	15	10	35
	대		1	2	6	3	12
	합계	1 (0.93%)	3 (2.78%)	12 (11.11%)	43 (39.81%)	49 (45.37%)	108 (100%)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현재의 지도 정도 충분성	초	5	18	7	2		32
	중	5	15	9			29
	고	14	17	4			35
	대		8	4			12
	합계	24 (22.22%)	58 (53.70%)	24 (22.22%)	2 (1.85%)	0 (0.00%)	108 (100%)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현재의 지도 효과에 대한 만족도	초	9	14	7	2		32
	중	7	18	4			29
	고	9	15	9	2		35
	대		7	5			12
	합계	25 (23.15%)	54 (50.00%)	25 (23.15%)	4 (3.70%)	0 (0.00%)	108 (100%)
향후 의사소통 윤리 지도 강화의 필요성	초			1	11	20	32
	중			3	10	16	29
	고			6	16	13	35
	대				7	5	12
	합계	0 (0.00%)	0 (0.00%)	8 (9.26%)	40 (40.74%)	54 (50.00%)	108 (100%)

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윤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사소통 윤리에 대해 별도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 약 90% 정도의 응답자들이 의사소통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소통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¹⁰ 응답자 중 20.37%만이 일정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여 직접적으로 가르친다고 답하였다. 69.44%는 잠재적·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답하였

으며, 10.18%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가르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사들이었다. 대학 입시 준비에 몰두하느라 정의적 영역 지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다.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주로 발표·토의·토론을 가르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듣기 태도, 말하기 자세, 언어 예절 측면에서 가르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직접적으로 가르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정규 교과 시간에 가르친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으나, ‘학생들끼리 폭력적 언어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활 지도 일환에서 가르친다’,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상급 기관의 조사가 있을 때 가르친다’, ‘활동 수행 정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말하기 활동 수행 평가에서 의사소통 윤리 관련 행위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라고 답하는 등 화법 교육 차원에서 지도하더라도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내용만을 지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윤리에 대해 현재 가르치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약 76%가 매우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지도하고 있는 정도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도 73.15%가 매우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국 약 90%의 응답자들은 향후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의사소통 윤리를 가르친다면, 어떠한 내용 요소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응답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

10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실제 지도

	가르치지 않는다	잠재적·간접적으로 가르친다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적으로 가르친다	합계
초		21	11	32
중	2	22	5	29
고	9	22	4	35
대		10	2	12
합계	11(10.18%)	75(69.44%)	22(20.37%)	108(100%)

음과 같다.

표 4. 의사소통 윤리와 관련하여 가르쳐야 하는 내용 요소(복수 응답)

의사소통 윤리 관련 내용 요소	응답자 수(비율)
상대에 대한 배려	74(68.51)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	69(63.88)
욕설 등 비방적·폭력적 언어 사용 경계	51(47.22)
적극적 경청	43(39.81)
언어예절(인사 예절, 웃어른과의 대화 태도, 호칭어 사용, 높임말)	32(29.69)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기	29(26.85)
표절에 대한 경계(인용 출처 밝히기)	18(16.66)
말에 대한 책임	15(13.89)
다문화 의사소통 윤리(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 차별적 표현 경계 등)	8(7.40)
기타	19(17.59)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이었으며, ‘욕설에 대한 경계’, ‘적극적 경청’, ‘언어예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언어생활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절에 대한 경계’는 대학의 화법 교육에서는 가르쳐야 할 요소라고 인식되고 있었으나, 초·중등학교 교사들에게는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도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전체 108명 중 8명에 불과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것에는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개념 형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메타 인식이 포함되었다. 관계 형성을 위한 목적의 말하기는 모두 의사소통 윤리와 연결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2. 화법 교육 교재의 의사소통 윤리 관련 내용 분석 결과

1)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 정도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 정도

분류 범주	분석 대상	
	관련도서 7권	교육과정 내용
인식 부재	3	
간접적 인식	4	
직접적 인식	0	∨

관련 도서 7권에서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제시되거나 관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경우는 없었다.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에 그쳤으며, 그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화법은 상대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 행위가 아니라 상대와 더불어 소통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짐에 따라, 4권의 도서에서는 의사소통의 본질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배려나 상호 존중의 덕목이 선언적으로 나마 강조되고 있었다. 배려나 상호 존중을 언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윤리성과 연결된다.

반면 3권의 도서는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¹¹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3권은 의사소통의 본질적 성격으로서 대인 관계적 성격을 간과

11 범주 명칭의 간결성과 분류의 용이성을 위해서 '인식 부재'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지만, 해당 도서의 저자들이 의사소통의 윤리적 측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책의 내용에 관련 인식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내용이 정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의사소통 윤리의 출발이 되는 의사소통의 관계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지면에 대한 제약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판단된 내용은 생략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3권의 도서는 의사소통 윤리성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중등학교 화법 교육 내용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기·말하기’ 영역의 내용 체계 중 ‘태도’ 범주에서 ‘듣기·말하기의 윤리’를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전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언어활동의 윤리성에 대한 각성의 결과이며 인성 교육에 대한 시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한 결과로 보인다.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기초 논의나 학교 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윤리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의 윤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화법과 작문’ 과목의 성취기준 ‘(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인식한다.’의 해설 일부에서는 ‘……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듣기·말하기의 윤리’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이 무엇인지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의미 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별도의 범주 및 성취기준의 일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

‘의사소통의 윤리’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별도 제시한 경우는 없었지만, 분석 대상 도서의 곳곳에는 의사소통의 윤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화법 교육 교재에서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논의를 별도의 항목을 설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그것의 세

부 내용은 현재 산발적으로 드러나는 윤리 관련 요소들을 한 곳에 모아 재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재 우리의 화법 교육에서 윤리 관련 요소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종합해 보고자 관련 요소들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된 내용 범주들은 국어 교육 관계자들이 의사소통 윤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용 요소(표 4 참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가르쳐야 할 것들이 교재에서 충분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표 6〉과 같다.¹²

표 6.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¹³

분류 범주	분석 대상											
	관련도서 7권							국어과 교육과정				
	A	B	C	D	E	F	G	합계	국어	국어 · II	화법과작문	합계
개방성	2			1	1		1	5(6.17)	2			2(5.88)
말에 대한 책임	1				1			2(2.46)	1			1(2.94)
상대 배려	7	2		1	1	8	11	30(37.03)	5	2		7(20.58)
비방적 표현 경계	1	1			1	2	1	6(7.40)	4	1		5(14.70)
상대 의견 존중	2	2		1		1	2	8(9.87)	4			4(11.76)
적극적 경청	1	3	1	1	1		1	8(9.87)	6			6(17.64)
진실성	3	3		2	3	5	3	19(23.45)			1	1(2.94)
표절에 대한 경계								0.(0.00)				0.(0.00)
공정성								0.(0.00)				0.(0.00)
기타	1	1	1					3(3.70)	6		2	8(23.52)
합계				-				81(100)		-		34(100)

- 12 코딩 결과, 관련 요소는 총 81건으로 집계되었다. 관련 도서의 평균 문장이 300~400쪽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로 분석된 사례 수는 예상보다 적었다. 사례 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며 전체적 경향성을 살피거나 분석 항목별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의사소통 윤리 관련 내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현재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여 의사소통 윤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13 관련 도서 7권의 기호는 임의로 부여하였음.

분석 대상 도서 7권에서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로 분석된 내용 중 가장 많이 확인된 내용 요소는 배려와 진실성이었다. 배려와 관련된 사례 수는 총 30건으로 전체 중 37.0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진실성 관련 사례 수는 총 19건으로 23.4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배려는 타인의 존재 자체를 돌보고자 하는 심려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주로 의사소통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나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되었다. 공손성의 원리는 자기 중심적 생각을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서 자기의 관점이 아닌 상대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배려 범주에 넣어 분석하였다. 공손성의 원리를 대표하는 정중어법도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배려 범주에 넣어 분석하였다.

진실성은 주로 협력의 원리 중 질의 격률 관련 내용에서 분석되었다. 질의 격률이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고 진실된 것을 말하라는 것으로, 진실의 덕목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Grice는 협력의 원리를 윤리적 지침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충분히 윤리적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Johannesen, 2008: 139).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과 적극적 경청과 관련된 사례 수는 각각 8건으로 9.87%를 차지하였다.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은 상대방의 입장, 의견, 생각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하는 것으로, 주로 토의 및 토론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되었다. 적극적 경청은 듣기의 태도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듣기의 유형이나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는 공감적 듣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적극적 경청 범주로 분류하여 코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코더 간 상호 조율을 통해서 공감적 듣기 관련 내용은 의사소통 윤리 요소로 집계하지 않았다. 공감적 듣기는 듣기의 태도나 듣기의 윤리로 접근되

기보다 듣기 기술의 하나로 논의되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이다.¹⁴

한편 말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사례 수는 2건만이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었다. 말은 상당한 힘¹⁵과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그 힘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말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표절에 대한 경계와 관련된 내용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10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중 연설 교재 10권의 의사소통 윤리 내용을 분석한 Pearson *et al.*(2006)에 따르면, 분석 대상 도서들이 윤리적 측면에 대해 접근하는 정도나 방식은 다양각색이었다. 하지만 표절에 대한 경계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어떠한 것이 표절이며, 표절의 결과는 어떠한지, 학생들의 연설이나 발표에서 표절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도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았다. 우리의 경우도 표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쓰기 윤리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구두 의사소통의 내용 구성에서도 표절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에 대한 인식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은 설득 목적의 연설이나 토론 담화 등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석 대상 도서 7권에서 관련 요소

-
- 14 듣기의 유형을 크게 분석적 듣기, 공감적 듣기, 대화적 듣기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효율적인 듣기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이창덕 외, 2005: 124). / 듣기 기술은 유형별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적절한 듣기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이창덕 외, 2005: 133). / 효과적인 듣기 기술, 나아가 고도의 듣기 방법인 공감적 경청에 대해 살펴보자(구현정 · 전영옥, 2005: 247).
- 15 이창덕 외(2010: 41)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말이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고의 힘'이라 할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의 힘',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의 힘',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결속의 힘'이라 하였다.

를 찾기는 어려웠다. 설득 목적의 담화에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정보 전달 목적의 담화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정보 전달의 목적 자체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이다. 이에 의사소통 윤리 요소로서 공정성이 갖는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으나, 관련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6〉과 같이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분석 대상 도서들이 의사소통 윤리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관련 요소들은 의사소통 태도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다소 비체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의사소통 윤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초·중등학교 화법 교육 내용에서는 관련 내용 요소가 성취기준의 해설 곳곳에 두루 반영되어 있었다.¹⁶ 일반 화법 교육 교재들에 비해서는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들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상대에 대한 배려’ > 적극적 경청 > 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 > 상대의 의견에 대한 존중 > 개방성 > 말에 대한 책임 = 진실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인성 교육 강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추가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 요소가 보완되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었다. 적극적 경청은 담화 유형과 관계없이 말하기 일반 및 듣기 일반에 걸쳐 의사소통에 임하는 태도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는 청소년의 욕설 문화 및 폭력적인 언어 사용 문화에 대한 교육적 처방으로 해석된다. 상대 의견에 대한 존중은 토의나 토론, 회의 등의 담화 유형에서 강조되는 덕목이었다. 말에 대한 책임은 일회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기타에는 공손한 태도, 매체 및 인터넷 이용 윤리, 언행일치, 의사소통의 관계 목적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16 내용 성취기준별 해설은 해당 성취기준을 지도하기 위해 가르쳐야 할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이나 교육 내용 재구성 과정에서 내용 성취 기준을 이해하는 데 그 해설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해설의 내용도 함께 살폈다.

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공통 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정의적 영역 교육 차원에서 의사소통 윤리 관련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선택 교육과정 ‘국어I’, ‘국어II’,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는 의사소통 윤리 교육에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의적 요소의 교육은 이른 시기부터 교육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효과적으로 내용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3)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내용 맥락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내용 맥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내용 맥락 범주

분류 범주	분석 대상											
	관련 도서 7권							국어과 교육과정				
	A	B	C	D	E	F	G	합계	국어	국어 I · II	화법과작문	합계
의사소통의 본질	5	1		1				7(8.64)	2		1	3(8.82)
의사소통의 일반 원리	2	3			2	2	15	24(29.62)			2	2(5.88)
비언어적 의사소통								0.(0.00)				0(0.00)
말하기 일반			1		1			2(2.46)	4			4(11.76)
듣기 일반		2	1	1	1	1	1	7(8.64)	2			2(5.88)
언어 예절						1	1	2(2.46)	6	2		8(23.53)
화법 유형별 이해	11	6		4	4	12	2	39(48.14)	14	1		15(44.11)
합계					-			81(100)		-		34(100)

관련 도서에서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들이 논의되는 주된 맥락은 ‘화

법 유형별 이해 > 의사소통의 일반 원리 > 의사소통의 본질 = 듣기 일반 > 말하기 일반 = 말하기 예절'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화법 유형별 이해에서 확인된 사례 수는 총 39건으로, 대화 · 토론 · 토의 등의 화법 유형별 성격, 원리, 방법 및 전략, 태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담화 유형별로는 대화 2건, 면접 2건, 발표 1건, 연설 1건, 토의 12건, 토론 8건, 협상 2건, 기타(꾸중, 거절, 사과, 설명, 설득 등) 11건이다. 대화 담화로 특정하여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된 것은 2건이었지만 기타로 분류된 꾸중, 거절, 사과의 담화가 대화 양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의사소통의 일반 원리를 논의할 때 상정하는 기본 담화 유형이 대부분 대화 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맥락은 대화 담화이다.

대화 담화에서는 주로 대화의 일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배려나 친실성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아울러 적극적 경청도 자주 언급되었다. 토론 및 토의 담화에서는 주로 참여자의 역할이나 태도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었다. 토론에서는 말에 대한 책임, 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가 확인되며, 토의에서는 상대에 대한 존중, 개방성이 확인되었다.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지 않는 내용 맥락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관련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단서들은 언어적 단서보다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는데, 의사소통 행위자의 의도나 의식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의 관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로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윤리 문제에서 완전히 비껴 설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초·중등학교 화법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들은 화법 유형별 이해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었다.¹⁷ 담화 유형별로는 대화 7건,

17 화법 영역 성취기준들 중 많은 경우가 구체적인 담화 유형을 상정하고 그것의 수행에 필

토의 3건, 토론 2건, 회의 2개, 발표 1건으로, 주로 대화 담화 관련 내용 성취 기준에서 확인되었다. 다만 관련 도서 7권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언어 예절 맥락에서의 논의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교육과정에 비속어, 혐약한 표현, 욕설 등을 경계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들이 논의되는 내용 맥락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주로 대화 담화 맥락에서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이나 그 이외 맥락에서의 윤리성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의사소통 윤리성이 개인 간 사적 소통의 관계 형성 목적이나 언어예절 차원에서만 접근되고 있는 것이다. 기능 중심의 언어 능력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던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해 깊고 넓게 천착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는 대화 담화에서부터 윤리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비중 수준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비중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표 8\)](#)과 같다.

표 8.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가 논의되는 비중 수준

분류 범주	분석 대상(관련 도서 7권)							합계
	A	B	C	D	E	F	G	
구절 수준	11	5		1			1	18(22.22)
문장 수준	3	4		3	3	12	10	35(43.20)
문단 수준	3	2	2	2	3	3	4	19(23.45)
항목 수준	1	1			2	1	4	9(11.11)
장절 수준								0(0.00)
합계				-				81(100)

요한 주요 기능들을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어,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들이 논의되는 비중 수준을 살펴보면, 그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할 경우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설명하고자 분량을 할애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관련 도서 7권 중 의사소통의 윤리성이나 의사소통 윤리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별도의 단일 주제로 다룬 장·절·항·목은 없었다. 의사소통 윤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항목 수준에서 다룬 경우는 총 9건으로 전체 중 11.11%를 차지하였다. 다만 이마저도 의사소통의 윤리성 측면에서 논의된 것이라기보다 의사소통의 일반 원리로서 Grice의 협력의 원리나 Leech의 정중어법을 항목 수준으로 다루는 내용에서 코딩된 것이다. 둘 이상의 문장에서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를 다루며 이를 일정한 의미 단락으로 발전시킨 경우는 적극적 경청 및 진실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 외에 대부분의 관련 요소는 주로 구절 수준이나 한 문장 이내에서 간략히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다. 일반 독자 입장에서 주어진 내용만으로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나 계기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국외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communication, speaking, speech, the art of speech 관련 전공 기초 이론서나 일반 교양서 대부분은 의사소통 윤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별도의 장이나 절로 구성한다. 주로 의사소통의 본질이나 의사소통의 일반 원리를 다루는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의사소통의 원리나 담화 유형을 고려하여 해당 장의 내용과 보다 밀접한 의사소통 윤리를 장마다 제시하기도 한다(Engleberg & Wynn, 2013; Verderber, et al., 2013; Griffin & Bone, 2013 등). 의사소통 행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처하거나 말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적절할지 고민해 보는 활동도 제공한다. 의사소통 윤리를 직접적으로 논의하여 해당 독자로 하여금 의사소통 윤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화법 관련서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중등학교 화법 교육과정의 내용 기술 체계는 7권의 관련 도서들과 상이하므로 〈표 8〉의 분류 범주를 기준으로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성취기준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해설의 전체 내용이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를 설명하는 데 초점화된 경우와 성취기준에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해설 내용 중 일부 구절이나 문장에서 언급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의사소통 윤리와 관련된 성취기준 34건 중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7건 (20.58%)으로, 공통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에서 6건, 선택 교육과정의 ‘국어I’에서 1건이 확인되었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27건(79.41%)으로, 공통 교육과정의 ‘국어’에서 22건, 선택교육과정의 ‘국어I’에서 2건, ‘화법과 작품’에서 3건이 확인되었다. 의사소통 윤리 관련 내용들은 하나의 내용 성취 기준으로 다루어지기보다 해당 내용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데 관여하는 정의적 영역의 요소로서 해설의 일부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는 수준이다. 하나의 성취기준이 오롯이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를 다루는 데 초점화된 것은 아니어서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어느 정도나 밀도 있게 가르쳐질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다.

한편 성취기준 차원에서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7건의 성취기준은 주로 ‘고운 말, 바른 말의 사용’,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듣기 · 말하기의 윤리’라는 범주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범주에 포함될 만한 대표적인 성취기준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사소통 윤리와 관련되는 대표적인 성취기준으로 비방적 표현을 경계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것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 정도가 교육과정에서 설정해 놓은 ‘듣기 · 말하기의 윤리’ 범주의 의미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물론 배려나 적극적 경청과 관련된 성취기준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공감과 배려’라는 별도의 하위 범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듣기·말하기의 윤리’ 범주의 외연이 좁아지게 되어 애초에 ‘듣기·말하기의 윤리’ 범주를 설정한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요컨대, 관련 도서 7권에 대한 분석 결과, 의사소통의 윤리성은 의사소통의 관계적 속성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수준에서 소략하게 논의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었다. 의사소통의 윤리와 관련될 만한 요소들은 다소 산발적이고 임의적이며 반영되어 있었는데, 배려와 진실성의 덕목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들은 주로 대인 간 사적 의사소통을 대표하는 대화 담화에서 논의되고 있었으며, 구절 단위나 한 문장 단위에서 간략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내용 수준으로는 일반 독자들에게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한편 학교 화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윤리를 별도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관련 요소들을 교육 내용에 의도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대화 담화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으며, 성취기준의 해설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듣기·말하기의 윤리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였더라도 그것의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해당 범주를 대표하는 성취기준에 기대어 그 의미를 추론해 볼 때 욕설 등을 경계하는 것 정도로 그 함의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려워 보였다.

3. 의사소통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논의

Engleberg & Wynn(2013: 16)에 따르면, 의사소통 이론(theories)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하는가?’ 등과 같이 ‘왜(why)’에 답하고, 전략(strategies)은 ‘이러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과 같이 ‘무엇(what)’에 답하며, 기능skills)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

는가?’ 등과 같이 ‘어떻게(how)’에 답한다고 한다. 하지만 뛰어난 화법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의사소통 이론, 전략, 기능에 능할 뿐만 아니라, ‘……인지 아닌지(whether)’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가 올바른지 아닌지, 윤리적인지 아닌지, 기만적인지 아닌지’ 등과 같은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화법 교재들은 이론, 전략,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만, 그 전략이나 기능들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거나 그 전략이나 기능을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지도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말의 효과성과 정확성, 표현의 기교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화자의 진실성, 말에 대한 책무성, 상호 배려 등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도 요청된다. 이에 의사소통 윤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사소통 윤리 교육 논의의 강점과 약점, 이를 둘러싼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들을 분석하면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strengths)	W(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과 교육과정 듣기말하기 영역 내용 체계 ◦의 히위 범주로 ‘듣기말하기의 윤리’ 설정 ◦대화 담화에서의 윤리적 측면 관련 논의 발달 ◦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 배려, 진실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윤리의 개념 미확립 및 인식 저조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의 단편적 제시 ◦말의 책임에 대한 관심 부족 ◦다문화 의사소통의 윤리에 대한 관심 부족
O(opportunities)	T(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각 분야에서 윤리성 논의 활성화 ◦인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 강화 ◦윤리 의식 제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막말 파동 및 욕설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윤리를 강제하는 것의 어려움 ◦도덕 교육과의 차별화 방안 구안의 어려움 ◦화법 연구 및 화법 교육 연구에서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논의 부족

그림 2. 의사소통 윤리 교육 논의의 SWOT 분석

의사소통 윤리를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을 기회 (O)로 삼아, 현재의 강점(S)은 강화하고, 약점(W)은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사소통 윤리 논의에 대한 위협(T) 요소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사소통 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논의를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

의사소통 윤리를 교육하기 위한 필수 전제로서 의사소통의 윤리성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과 관심이 요청된다.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인식 틀이 형성되어 있어야 자신의 의사소통이 비윤리적인 의사소통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윤리를 잠재화시키지 말고 보다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반 학습자 입장에서 별도로 학습해야 할 개념이 증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전공자나 국어 교육 관계자들에게는 공식적인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도 NCA(1999)의 윤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신조와 같은 의사소통 윤리 규약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성격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의사 결정에 지침이 될 만한 윤리 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유명무실한 형식일 뿐이며 용어나 진술들이 추상적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그 분야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그 분야에서 지켜야 할 행위 규범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각 개인에게 의사소통 윤리 규약을 강제한다고 하여 개인이 그것을 실천하는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화법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도적인 인식 틀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의사소통의 윤리 개념의 규명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의도적인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윤리 개념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의사소통의 윤리를 정의할 때, 많은 경우가 ‘옳고 그름’이라는 진술을 활용한다. 예컨대 Engleberg & Wynn(2013: 16)는 의사소통 윤리를 ‘의사소통 행위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인간 행동에 관여하는 옳고 그름의 원리 체계’(Brydon & Scott, 2003: 129), ‘행동과 사고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Grice & Skinner, 2004: 20), ‘옳고 그름의 문제를 결정하는 믿음, 가치, 도덕적 원리’(Beebe & Beebe, 2003: 44)라는 구절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윤리를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윤리학의 관점은 토대로 의사소통 윤리를 규정하는 것이다(Pearson, *et al.*, 2006: 517).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윤리학 내부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화법은 정확하게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다. 화법에서는 상황·맥락적 적절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의사소통 행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즉 화법에서 의사소통의 윤리를 논의하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므로, 윤리학적 관점에 고착되어 의사소통 윤리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의사소통 행위에 윤리성이 개입되는 까닭은 의사소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타자의 존재에서 기인한다. 즉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가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리 문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의 윤리를 정의할 때는 타자의 존재를 고려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O’Hair, Steward, & Rubenstein(2004: 53)은 윤리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판단 및 행위’라고 하였다. Osborn & Osborn(2003: 18)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방법’으로서의 윤리를 강조하였다. 이에 타자의 존재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윤리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Jaffe(2001: 42)는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적 상호교섭 과정에서

자발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도덕적 책임, 옳음, 선의, 진실, 정의, 덕과 같은 가치를 추구해야 할 의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의사소통 윤리란 의사소통의 상호교섭 과정에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상대를 위해서 견지해야 할 도리나 행위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의사소통 윤리 개념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의사소통 윤리를 고려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에 부합하는 개념을 확립하고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사소통 윤리 요소의 구체화

의사소통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일환으로 화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다양한 소통 장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현상을 분석하여 현대의 언어문화에 적합하면서도 오늘날 언어 사용의 문제적 현상에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한 윤리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김문수(2005)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 문화의 대표적인 문제 양상으로 신중함의 결여, 말에 대한 책임성의 부족, 듣기의 부재, 세대 및 집단 간 언어 격차로 인한 소통의 장애를 꼽았다. 이는 본고의 의사소통 윤리 관련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와도 연결된다. 즉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화법 관련 도서 7권이나 초·중등 화법 영역 교육과정 내용에서 말에 대한 책임은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화자의 윤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선정되어 있었으나, 청자의 윤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경청 한 가지 요소만 언급되고 있었다. 즉 화법 교육에서 간과했던 측면들이 오늘날의 문제적 의사소통 문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동안 소홀히 취급하였던 요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참고할 때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이다. 특히 최근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막말이나 과언, 실언, 허언 등 무책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에서 비롯될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말의 힘을 윤리적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불특정 다수나 대중을 상대로 한 의사소통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중 의사소통은 말의 힘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담화 유형이기 때문이다. 말의 힘이 윤리적으로 인도되고 자신이 한 말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간과 하지 않을 때 윤리적인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고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부정적 언어 사용 행위로 인한 폐단들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청자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다. 의사소통을 상호교섭 과정으로 보는 이상 발신자와 수신자의 구별이 엄격할 수 없으며 화자에게만 윤리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즉 의사소통 참여자로서 상호간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¹⁸ 특히 수신자 역할을 할 때도 다양하고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Johannessen(2008: 121)은 수신자의 대표적인 책임으로 합리적 회의와 적절한 피드백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였다. Lucas(2009)도 연설의 윤리적 의무는 화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며, 청중의 책임으로 예의와 관심을 갖고 경청하기, 화자를 선불리 판단하지 않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강조하였다. 물론 기준에도 강조되어 왔던 적극적인 경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기의 요소들은 이미 강조되고 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적극적 경청의 의미가 공감적 경청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라면 청자의 윤리를 세분화하여 청자가 부담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구체화하

18 Littlejohn & Jabusch(1987)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윤리적 책임감을 제시하고, 특히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상호교섭 결과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윤리적 책임의 핵심 요소로서 배려와 정보 개방성을 제시하며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높고 낮음의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책임을 윤리적 책임, 공유되지 않은 책임, 거부된 책임, 무책임으로 나누었다(Johannessen, 2008: 144).

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 다문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문화 간 의사소통, 다문화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대학의 화법 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듯하나,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아직 그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 수준은 낮은 편이다. 다문화 현상은 오래전부터 국제 사회의 이슈였으며 근래에 와서는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민족이나 국적 등의 문화적 차이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성, 나이, 사회적 지위, 건강 상태, 교육, 종교, 성격, 지역, 장애 유무 등도 다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양한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¹⁹

넷째, 구두 의사소통에서도 표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대부분의 국외 선행 연구에서는 표절 문제를 빠트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대학 화법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초·중등학교 현장에서는 표절 문제를 쓰기의 윤리로는 다루고 있지만, 발표 등의 구두 의사소통에서 활용하는 자료의 표절 여부에 대한 인식은 저조하다. 표절은 말하는 내용에 대한 윤리적 정직성 문제와도 관련되므로 구두 의사소통에서도 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19 문화 간 의사소통이나 다문화 의사소통 윤리로는 ‘상대가 나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상대를 대하라.’는 백금률(The Platinum Rule)이 부각되고 있다(Neher & Sandin, 2007; Johannesen, 2008).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The Golden Rule)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시각과 처지에서 보는 것이라면 백금률은 상대방의 시각과 처지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상대가 속한 문화권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구체화하여 화법 교육 내용에 반영할 때는 몇 가지만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언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 간 사적 의사소통이나 관계 형성 목적의 대화 상황뿐만 아니라, 집단 내 공적 의사소통 상황, 복잡한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상황,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조되는 상황 등 보다 다양한 담화 유형에 의사소통의 윤리를 반영해야 한다. 의사소통 윤리를 화법 교육과정 내용에 반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전반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의사소통 윤리를 설정하여 일반적인 듣기 및 말하기 차원에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담화 유형별로 해당 담화의 수행 과정에서 보다 유의해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담화 유형별 중점 윤리를 설정하여 담화 유형 차원에서 반영하는 방법이다.²⁰

후자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담화 유형별 지식이나 기능에 초점을 둔 논의 이외에 해당 담화 양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내면화해야 하는 정의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영진(2012)의 경우, 학습자들의 논증적 소통 양상을 분석하여,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상대를 자신의 설득에 승복시키려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 상호 대립적·파괴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증의 윤리를 내면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논증자가 추구해

20 의사소통 일반 윤리를 설정하여 반영하고자 한다면, 배려·말에 대한 책임·진실성·다양성에 대한 존중·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표절에 대한 경계·공감적 경청·합리적 회의·적극적 피드백 등을 선정할 수 있다. 담화 유형별 중점 윤리를 설정하여 반영하고자 한다면, 대인 의사소통에서는 배려·진실성·공감적 경청을, 소집단 의사소통에서는 공정성·다양성에 대한 존중·비방적 표현에 대한 경계·합리적 회의를, 대중 의사소통에서는 말에 대한 책임·표절 경계·적극적 피드백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거칠고 투박하게나마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일 뿐, 교육 내용으로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의 개념과 관계에 대한 정교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야 할 윤리와 논평자가 추구해야 할 윤리를 선정해 보였다. 이처럼 특정 담화 양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적 현상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담화 유형별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화 담화 이외 보다 다양한 담화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유의해야 할 윤리 요소를 살피고, 이에 대한 학문 공동체의 합의가 마련된다면 의사소통 윤리 교육 내용의 구체화·정교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의사소통 윤리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의사소통 윤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의사소통 윤리 교육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청된다.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제시한다고 해서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윤리 요소만을 강조하게 되면 도덕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²¹

화법 교육에서 의사소통 윤리 교육은 이미 입증된 윤리적 가치나 덕목을 제시하고 그것을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의사소통 행위에 내재된 윤리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왜 윤리성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구되는지 의식적으로 일깨우고, 어떤 것이 윤리적인 의사소통이고 어떤 것이 비윤리적인 의사소통인지에 대한 구별 의식을 길러 주고,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듣는 것이 윤리적인 소통 방법인지 알고 실제 수행하며 습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한편 화법 교육에서 의사소통 윤리 교육을 실천할 때는 윤리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화법은 상황 맥락

21 도덕 교육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도덕적 사유와 관계되는 소통 행위는 차치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 교과의 성격에 맞게 접근 방식을 달리하여 교과 경계를 넘나들며 가르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일이다. 윤리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적 행위 실천은 특정 교과를 통해서만 가르쳐야 할 지식이 아니라 전 교과를 통해서 길러져야 할 역량으로 접근될 필요도 있다.

에서의 적절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이 도덕 교육과의 차별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Spitzberg & Cupach(2011)은 윤리성과 적절성을 두 축으로 하여 메시지의 성격을 4가지로 유형화하면서, 윤리적이면서도 적절한 bright side message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자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윤리성과 적절성이 상호 대립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윤리적이면서도 적절한 소통 방법인지 고민해 보는 활동을 통해 윤리적 의사소통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화법 교육에서 의사소통 윤리 교육이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구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의사소통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초·중등학교 국어 교사 및 화법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윤리 교육과 관련된 인식을 설문 조사하고, 학교 화법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교육과정 내용과 대학 화법 교육 및 일반 화법 교육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교양 화법서의 의사소통 윤리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의사소통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개념들이 명료하게 확립되지 못했고 관련 내용들은 대화 담화를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듣기·말하기의 윤리’라는 범주는 설정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축소되어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애초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화법 교육이 의사소통 행위에 요구되는 윤리성을 일깨워 주고 보다 윤리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행위에서 윤리성을 논의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소통 윤리 개념 설정

하기, 문제적 의사소통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의사소통 윤리를 화법 교육의 관점으로 교육하는 방법 마련하기 등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제안은 시론적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의사소통 윤리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정교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의사소통 윤리는 종래 화법 영역 교육 내용의 태도 범주에서 다루어 왔던 덕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의사소통 윤리 요소들이 그것들과 완벽한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사소통 윤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인지적 기체들이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던 덕목 차원의 태도와 동일하지만은 않다. 의사소통 윤리와 관련하여 교육해야 할 요소들은 사고 차원의 태도, 상위인지 차원의 태도, 가치화 차원의 태도, 수행 차원의 태도, 내면화 차원의 태도 속성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 범주 및 기능 범주 교육 내용들과의 상호작용도 필요로 한다. 이에 박인기(2012: 85)도 언어윤리와 관련되는 내용은 그 자체로 독립된 태도 교육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했을 것이다. 또한 관련 요소들을 새롭게 범주화하여 의사소통 윤리라는 고유한 명명을 부여하게 되면 그 가치와 위상에 보다 주목하게 될 것이다. 부디 본고가 화법 교육에서 의사소통 윤리 교육 논의의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본 논문은 2014. 1. 29. 투고되었으며, 2014. 2. 7. 심사가 시작되어 2014. 2.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문수(2005), 「한국인의 전통적 커뮤니케이션 가치관에 대한 연구·말에 대한 속담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5(3), 63-91, 한국지역언론학회.
- 김성태(2005),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 이론』 1(2), 39-67, 한국언론학회.
- 박양주·이양희(2012), 「국내 교육공학분야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교육공학연구』 28(2), 263-287, 한국교육공학회.
- 박인기(2003), 「생태학적 국어교육의 현실과 지향」, 『한국초등국어교육』 22, 1-3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_____(2012), 「‘욕설언어현상’에 대한 교육적·문화적 진단과 대안 모색」, 『화법 연구』 20, 101-139, 한국화법학회.
- 서영진(2012), 『상호 교섭적 논증 교육의 내용 구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도영(2006), 「말하기 교육 목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국어교육학연구』 25, 341-363, 국어교육학회.
- 임칠성(2011), 「화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문교육』 10, 261-388, 고려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 주재현(2002), 「내용분석 방법의 수행절차 및 적용 연구사례 분석」, 『정부행정』 3, 29-55, 명지대 정부행정연구센터.
- 최영환(2006), 「상생언어 연구의 과제」, 『국어교육』 120, 249-285, 한국어교육학회.
- 최인자(2006), 「상생 화용 교육을 위한 소통의 중중적 기제 연구」, 『국어국문학』 144, 393-416, 국어국문학회.
- 최현섭(2003), 「상생화용론 서설」, 『국어교육』 113, 27-78, 한국어교육학회.
- Arnett, R.(1987), "The status of communication ethics scholarship in speech communication journals from 1915 to 1985," *Central States Speech Journal*, 38, pp. 46-61.
- Beebe, S. A. & Beebe, S. J.(2003), *Public speaking: an audience centered approach*(5th ed.), Pearson Education.
- Brydon, S. R. & Scott, M. D.(2003), *Between one and many: The art and science of Public speaking*, McGraw Hill.
- Christians, Clifford G. & Lambeth, Edmund B.(1996), "The status of ethics instruction in communication departments," *Communication Education*, 45(3), pp. 236-243.
- Coopman, Stephanie J. & Lull, James(2012), *Public Speaking: The Evolving Art*(2nd ed.), Cengage Learning.
- Engleberg, Isa N. & Wynn, Dianna R.(2013), *THINK Communication*(2nd ed.), Pearson Education.
- Grice, G. L. & Skinner J. F.(2004), *Mastering public speaking*(5th ed.), Allyn and Bacon.
- Griffin, Cindy L. & Bone, Jennifer Emerling(2013), *Invitation to Human*

- Communica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Publishing Company.
- Jaffe, C. I.(2001), *Public speaking: Concepts and skills for a diverse society*(3rd ed.), Wadsworth/Thompson Learning.
- Jaksa, J. J. & Pritchard, M. S.(1994), *Communication ethics: Methods of analysis*(2nd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Publishing Company.
- Jensen, J. V.(1985), “Teaching ethics in speech communic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34, 324-330.
- _____ (1997), *Ethical issues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Erlbaum.
- Johannesen, Richard L.(2001), “Communication Ethics:Centrality, Trends and Controversies,” *Communication yearbook 25*, Lawrence Erlbaum Assoc Inc, pp. 201-235.
- Johannesen, Richard L., Valde, Kathleen S., & Whedbee, Karen E.(2008), *Ethics in Human communication*(6th ed.), Waveland Press.
- Johnson, R. C.(1970), “Teaching speech ethics in beginning speech course,” *The Speech Teacher*, 19, pp. 58-61.
- Joseph A. Devito(2003), *Human Communication The Basic Course*(9th ed.), Allyn and Bacon.
- Lucas, Stephen E.(2009), *The Art of Public Speaking*, 김주환 역(2013), 스파치의 정석, 교보문고.
- Neher, William W. & Sandin, Paul J.(2007), *Communicationg Ethically*, Pearson Education.
- O'Hair, D., Stewart, R., & Rubenstein, H.(2004), *A speaker's guidebook*(2nd ed.), Bedford/St. Martin's.
- Osborn, M. & Osborn, S.(2003), *Public speaking*(6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 Pearson, Judy C. et al.(2006), “What art students being taught about ethics in public speaking textbook?” *Communication Quarterly*, 54(4), pp. 507-521.
- Poldner, E., Simons, P. R. J., Wijngaards, G., & van der Schaaf, M. F.(2012),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dures to analyse student's reflective essays: A methodological review of psychometric and edumetric aspects,” *Educational Research Review*, 7(1), pp. 19-37.
- Spitzberg, B. H. & Cupach, W. R.(2011), *The dark side of close relationship II*, Routledge.
- Tammy Swenson-Lepper(2012), “Teaching Communication Ethics and Diversity,” *Communication Teacher*, 26(4), pp. 228-235.
- Verderber, Kathleen S., Verderber, Rudolph F., & Sellnow, Deanna D.(2013), *Communicate!*(14th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Publishing Company.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현황 —설문 조사 및 화법 교육 교재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서영진

본고는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 현황을 살피기 위해 초·중등 학교 국어 교사 및 화법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윤리 교육과 관련된 인식을 설문 조사하고, 학교 화법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 교육과정과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화법 교육 교재로 활용되는 교양 화법서의 의사소통 윤리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의사소통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개념들이 명료하게 확립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관련 내용들은 대화 담화를 중심으로 피상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듣기·말하기의 윤리’라는 범주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축소되어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애초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사소통 윤리 교육과 관련된 기준 논의의 강점·약점·기회요인·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의사소통 윤리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하였다. 그것은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 가지기, 의사소통 행위에서 윤리성을 논의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소통 윤리 개념 설정하기, 문제적 의사소통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윤리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선언적·학술적·계몽적 접근에서 벗어나 화법 교육의 관점으로 교육하는 방법 마련하기이다.

본고의 논의는 화법 영역 교육과정에서 ‘듣기 · 말하기의 윤리’ 범주의 의미와 그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이가 의사소통 윤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의사소통 윤리 교육의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화법 교육, 의사소통, 윤리성, 의사소통 윤리 교육 현황, 화법 교육과정, 교양 화법서, 내용 분석, 의사소통 윤리 교육 방향

ABSTRACT

Recognition and Education Status of Communication Ethics

—focused on survey and content analysis of
speaking teaching materials—

Seo, Young-jin

This paper tried to look into a necessity that more direct and active education on communication ethics is required in speaking education. For this purpose, researches on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and its recogni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s and speaking education experts were conducted and factors of communication ethics in speaking education contents were analyzed.

In result, it is found that many people share a view that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is currently needed. However, concepts of communication ethics were vague and poorly established. Further, contents of communication ethics existed fragmentarily in dialogue or conversation aspects.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although there was a category of 'Hearing & Speaking Ethics', the concepts were narrowly established.

Hence this paper analyzed pre-existing arguments on communication ethics through a prism of Strengths · Weaknesses · Opportunities · Threats and suggests a direction of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future. Main suggestions are: to pay intentional attention on communication ethics; clear establishment of relevant concepts on communication ethics; more emphasis of factors on communication ethics to improve problematic communication culture and apply the factors to the curriculum; and careful preparation of how to educate communication ethics from a perspective of speaking education beyond declaratory, academic and enlightening approaches.

The author hopes this paper with the findings reinvigorate an interest in communication ethics and pave a way to strengthen communication ethic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speaking education,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 status, speaking educ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s, content analysis, direction of communication ethics education